



주민세 사업소분 개정 사항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개정 내용

기존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균등분 (8월)	개인	12,5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	62,500원 ~ 625,000원
재산분 (7월)	사업자	250원 / m ² <연면적 330m ² 초과>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0.5%



개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개인분(8월)	<기존과 동일>	
사업소분 (8월)	사업자 (개인·법인)	기본세액 (62,500원 ~ 250,000원) + 250원/m ² <330m ² 초과시>
종업원분	<기존과 동일>	



문의처

- 대표번호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지역별 문의처 : 부천시청 세정과

지역별	전화번호	FAX
중동, 신중동, 상동	032-625-2602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032-625-2603	032-625-2589 032-625-2579
심곡동, 부천동, 대산동	032-625-2604	

Fantasia
판타지아 부천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www.bucheon.go.kr T. 032) 320-3000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7.1. 기존 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청렴·**한**·세상

부천시청 세정과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8월 중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신고분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실제사업장 연면적과 다른 경우는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 대상 및 세액 계산

신고·납부기간	2022. 8. 1. ~ 8. 31.
납부의무자	7. 1. 기준 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신고·납부세액	① 기본 세액 + ② 연면적 세율 (250원/㎡)

① 기본 세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25%)	자본금 (출자금액)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25%)	
50,000원	12,500원	50억 초과	200,000원	50,000원	
		30억 초과 50억 이하	100,000원	25,000원	
		30억 이하	50,000원	12,500원	
		그밖의법인	50,000원	12,500원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
사업소 총 연면적(㎡) × 250원
(단,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1㎡ 당 500원)

※ 개인사업자 납세의무 적용 대상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백만원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2항)

사업소 연면적

- 과세면적 : 사업장 전용면적 + 공용면적 포함 (전시장, 주차장, 계단, 화장실, 기계실 등)
※ 건축물은 무허가 또는 가설건축물도 과세대상임(천막, 컨테이너, 캐노피 등)
- 비과세면적 : 종업원의 보건, 휴식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 (직장여린이집, 휴게실, 탈의실, 식당)

신고서(연면적 과세표준) 작성요령

• 사업장 면적 산정시 주의 사항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장 면적은 반드시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한 총 연면적**으로 산정 하여야 하며, 건축물 대장과는 별도로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등을 사업장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이를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 사업장 건축 면적 310㎡ + 가설건축물 30㎡ = 과세면적 340㎡ → 납세의무 발생

• 자가 건축물이 아닌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차로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의 건축물 소유주가 2차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건축물의 소유주도 사업주인 임차인에게 주민세(사업소분)를 납부하여 줄 것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과세제외 면적 산정요령

비과세 대상 면적은 종업원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후생 복리 시설로 건축물 대장상에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는 대장 면적을 적용하되 건물의 일부를 복리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줄자 등으로 실측하여 면적을 산정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방법

• 신고서는 관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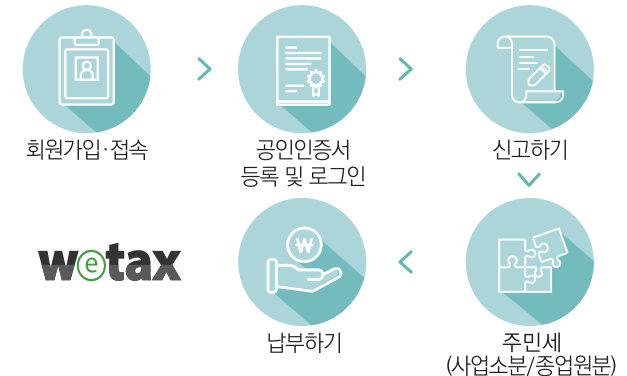
• 수기고지서의 경우 은행 청구수납이 제한(은행별 사정에 따라)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경우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특히 가상계좌 이용납부 및 카드납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 신고를 하여야만 가능하며, 카드수납(분할 결제 등) 문의는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수기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는 경우 고지서 작성요령을 숙지 하셔서 기록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반드시 부천시 관내 시중 은행만을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TAX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 꼭! 부탁드립니다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신고·납부 방법 [주민세(사업소분)] ▶ 신고사항 입력 ▶ 인터넷 납부 (전국 은행 CD/ATM기 이용 납부)
※ 위택스 신고서는 공인인증서 불필요(인터넷 납부시 공인인증서 필요)

서면 부천시청 세정과에 [FAX, 우편, 방문] 서면 신고 ▶
신고·납부 방법 납부서 작성 후 관내 시중 은행,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

무신고(과소신고) 및 미납부 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20%(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지연일자 × 2.2/10,000)가 추가하여 부과됩니다.